

■ 치과 칼럼

# 사랑니(wisdom tooth)

사랑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2개의 치아 중 가장 늦게 나는 이로, 위아래 어금니 중 제일 뒤편, 세 번째 어금니를 일컫습니다. 사랑니가 나는 시기는 대개 십대 후반이나 이십대 초반이 됩니다. 영어로 wisdom(지혜) tooth라 불리는 이유도 사랑니가 나는 시기인 17-20대 초반이 우리의 인생에서 성숙함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첫 시기이기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니가 반듯하게 잘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잇몸뼈에 완전히 묻혀 있거나, 반반 비스듬히 나와 잇몸으로 덮혀 있고 앞의 치아를 손상시키는 형태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구 치아의 현 상황과 치열 변화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와 구강검진을 토대로 사랑니의 발치 여부를 상담 받게 됩니다. 사랑니의 발치 여부는 나온 위치, 매복의 정도, 잇몸 상태, 충치의 여부, 앞의 치아의 손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 누워서 난 사랑니는 앞에 치아에 충치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크기에 이러한 매복 사랑니는 발치를 해야 하고,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 주변 잇몸이 염증을 유발하거나, 반쯤 나오다 말고 옆의 치아의 충치를 일으키는 경우 발치를 요합니다. 반면에 사랑니가 똑바로 맹출되어 있고,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충치가 없고 주변 치아와 잇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치의 가장 좋은 시기는 십대 후반이나 이십대 초반입니다. 잇몸뼈가 아직 완전히 굳지 않고 사랑니 뿌리가 완전히 자라지 않아 발치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지난 중년이나 노년의 사랑니 발치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시기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성인병의 컨트롤 유무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매복 된 사랑니로 인한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복 되는 정도는 치아가 나오는 공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매복 치아는 앞

치아쪽으로 비스듬히 나와 있고 그 위로 잇몸이 덮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매복 사랑니가 항상 증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복돼 있는지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나다면 부분적으로 사랑니 위를 덮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입니다. 그 증상으로는 잇몸 부종과 출혈, 아래턱의 부종, 구취, 두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니 주위의 잇몸 염증은 pericoronitis(지치주위염)이라 불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빨리 내원하여 염증의 정도에 따라 항생제 처방을 받고 염증을 가라앉힌 후 발치를 해야 합니다.

매복 사랑니의 발치는 그 깊이와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신중히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매복이 깊어서 사랑니의 뿌리가 아래턱의 주 신경에 걸쳐 있거나, 가까이 있고, 심하게 누워 있다면 구강외과에서 발치를 받기를 권유합니다.

다음은 사랑니 발치 후에 생길 수 있는 증상(complication)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발치 후에 3-4일 통증과 부종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태가 나아져 일주일 후엔 다 낫게 되는데, 발치 3-4일 후에 갑작스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면 dry socket(드라이소켓)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발치 후에 혈액이 응고되어 상처 부위를 덮어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는데, 이 혈액 응고체(blood clot)가 치아가 발치 된 자리인 소켓에서 떨어져 나와 잇몸뼈가 외부로 노출되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을 깨끗이 린스하고 드레싱을 넣어 증상을 완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주일 후엔 대부분 사라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픈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주기적인 치과 점검으로 적절한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웰치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리나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 프로디 학원 사태와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601 면제에 대하여

## 1. 601 면제란 무엇인가?

영주권 거절 사유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불법체류 2) 범죄사실 3) 불법노동. 이 중 불법체류(밀입국)의 이유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 알려진 대로 601A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이외의 다른 이유 즉 범죄사실로 인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1 면제를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어떤 범죄가 대상이 되나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죄(Moral Turpitude Crime)가 이에 해당됩니다. 폭행, 상해, 살인, 강간, 배우자 폭행, 절도, 강도, 매춘, 사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이민관 관련된 사기 예를 들어 이민신청 시에 거짓말을 한 경우(Misrepresentation) 또는 학생비자 사기(프로디학교와 관련된 케이스)에 관련된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601 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기준은 무엇인가요?

먼저 면제 신청인에게 영주권자/시민권자 직계가족(Immediate Family)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란 신청인의 배우자와 부모를 의미합니다. 면제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 신분을 얻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직계가족이 겪게 될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승인의 기준이 됩니다. 이민관이 직계가족이 겪게 될 고통이 극심하다고(Extreme) 판단하는 경우에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됩니다. 이를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크게 1) 질병 등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 2) 우울증 등의 정신 고통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 3) 재정적 고통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의 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범죄의 경우는 직계가족의 범주에 성년/미성년 자녀를 포함시켜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4. 601A와의 차이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 것과 달리 601면제의 경우는

신청인이 미국에 체류 중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면제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5. 프로디학원 문제와 601 면제

프로디학원에 등록했다는 것은 프로디학원을 통해서 저질러진 학생비자 사기 범죄에 공범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영미법 하에서는 공범을 동일한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인이 프로디 관련 학교에 등록을 한 경우에 공범으로 처리하고 범죄사실 때문에 특히 이민 사기를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의 거절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601 면제를 통하여 프로디학원에 등록했다는 범죄 사실을 면제 받아야 합니다.

## 6. 프로디 문제로 현재 영주권 심사가 계류되고 있는 경우 언제 601 면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601 면제를 신청하는 시기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아예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601 면제를 신청하고 면제를 받은 후에 I-485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I-485와 601 면제를 함께 신청해 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I-485 접수 후에 문제를 인지하고 I-485가 거절 되기 직전 그리고 심사가 계류 중인 동안 601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I-485가 거절되고 나서 601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방법은 최근에 영주권 신청(I-485)이 거절되고 나서 추방 재판에 바로 회부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디 문제로 485 심사가 계류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빨리 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방 재판 회부를 피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다시 485 신청서를 재 접수하고 인지세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